(비공식 번역본)

투자위원회 고시

제16/2567호

투자촉진을 받은 외국법인의 사무실 및 주거용 토지 소유 허가 기준

투자촉진을 받은 외국 법인이 현재 상황에 맞게 사업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불기 2520년(서기 1977년) 투자촉진법 제27조에 의거하여, 투자위원회는 2022년 8월 8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6/2565호를 취소하고 다음의 내용을 고시한다.

1. 등록 자본금 5천만 바트 이상을 납입한 외국인 투자촉진 기업은 다음 기준과 조건에 따라 사무실 및 주거용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.
   1.1 촉진 활동의 사무실 용도의 토지는 5라이[i]를 초과할 수 없다.
   1.2 실무자들의 주거용 건물 개발을 위한 토지는 20라이를 초과할 수 없다.
   1.3 사무실 및 거주지용 토지는 촉진 프로젝트 사업장과 같은 곳에 위치할 수도 있고, 밖에 위치할 수도 있다.
   단, 특별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, 투자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바에 따라 개별적(case by case)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2. 투자촉진의 지위를 종료하는 경우, 종료 후 1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 또는 양도해야 한다.
3. 투자청은 사업 활동 유형, 촉진 프로젝트 위치와의 거리, 주거 단위 규모 등 필요할 경우, 추가 기준을 발표할 권한이 있다.

지금부터 시행한다.

고시일 2024년 11월 1일

Pichai Chunhavajira

(Mr. Pichai Chunhavajira)

부총리

투자위원회 의장

[i] 태국의 토지를 나타내는 단위로 1라이는 1,600㎡와 같다.